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3
----------	-----

2012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15일, 박양숙·김미경의원 공동발의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미경의원)

가. 제안이유

-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안됨

나. 주요골자

- 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 중 공립작은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4조)
- 다.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진흥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17일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동 제정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와 제5조(예산의 지원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동 법시행령 제정안을 준용하여 기술이 되고 있으므로 그 조문내용의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
- 서울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마다 300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도서자료 구입비로 200만원씩 총6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서울시는 700여개가 넘는 작은도서관 중 주민 대출·열람 등 이용 실적, 홍보현황, 비영리 목적 여부와 주민이용의 편의성 및 보편성, 운영 능력 등 운영점검표에 의한 자치구의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함.
-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별도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2012.6.21.현

재 35개이며 군 및 자치구를 포함하면 대략 68개소가 이미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조례 제정 대부분은 이미 모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제정 이전에 이루어졌음. 참고로, 동 제정조례안의 모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12년 8월 18일이므로 동법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서울시가 2011. 12. 31. 현재로 개관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서울시에 748개소(공립 422, 사립 326)가 있으며 그 운영형태는 자치단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관주도형이 402개소(53%)로 가장 많고,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민·관협력형이 20개소(3%), 아파트주민회, 부녀회, 교회, 민간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주도형이 326개소(44%)임.

작은도서관 수	공립		사립
	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
748 (100%)	402 (53%)	20 (3%)	326 (44%)

- 또한 작은도서관 평균면적 $90m^2$ (27평)로 구립 평균면적 $1,393m^2$ (420평) 및 교육청 도서관 $4,685m^2$ (1,417평)에 비해 소규모이며 작은도서관의 55%(413개소)가 $66m^2$ (20평)미만이며, $132m^2$ (40평) 이상인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16%(119개소)에 불과함. 평균 장서수의 경우에도 11,694권으로 구립도서관 평균 44,576권의 1/4(26%) 수준임. 이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구성은 전임직원 6.3%(425명), 공익요원 4.8%(325명), 자원봉사자 89%(6,032명)로 전임직원의 비율이 낮고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및 운영여건이 열악하므로 동 제정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특히 작은도서관의 육성을 위한 시범지구 육성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외에도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동 조례안의 제정이 되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을 지원·육성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선지원을 하는 등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는 한 도서관 전체에 대한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자칫 작은도서관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도미노현상으로 현재의 운영여건도 어려운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도서관계는 도서관 전체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확산을 위한 각종 정보·여가서비스 활동의 전개 등을 통하여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을 안 제8조 본문으로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73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모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구청장의 의무로 규정한 부분이 동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 제출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태조사 결과 제출)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결과 제출) ①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결과 제출)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중 시에 소재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중 공립작은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시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를 우선 지원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치구의 시범지구 지원 등)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시범지구 지정·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결과 제출)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